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나325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나3250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1021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윤제선, 정영훈

변론 종결2021. 10. 26.

판결 선고2021. 11. 23.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1021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8.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7,407,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407,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25.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20. 11. 26. 그 판결正本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21. 2. 10.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되자 2021. 2.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3781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23. 'C은 원고에게 46,297,643원 및 그 중 32,351,186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2098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20. 'C은 원고에게 5,514,498원 및 그 중 3,737,155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F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10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2. 27. 'C은 F 주식회사에게 24,732,481원 및 그 중 23,070,462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났다. 위 지급명령이 2017. 1. 2. C에게 송달되어 2017. 1. 17. 확정되었다. F 주식회사는 2018. 12. 7.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4) 2019. 11. 11.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09,906,924원이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37815호 판결	32,351,186	27,448,335	59,799,521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20984호 판결	3,737,155	2,834,250	6,571,405
3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1076호 지급명령	23,070,462	20,465,536	43,535,998
합계	109,906,924			

나. 이 사건 분할협의

- 1) 망 G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8. 8.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와 C, H가 있고, 상속지분은 각 1/3씩이다.
- 2) 피고와 C, H는 2019. 1.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V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4. 2. 12. 기준 감정평가액은 292,225,000원이다.
-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2. 8.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 분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년경부터 망 G을 부양한 피고의 노고와 기여, 피고의 경제적 환경이나 가정적 상황,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 이 사건 분할협의를 목적이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충분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을 제5~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C, H의 특별수익이 등이 있어 그로 인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망 G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한 점, C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점, C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점, 다른 형제들과 달리 미혼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점, 오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아왔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H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는 2014. 2. 12. 기준 감정평가액인 292,225,000원 이상으로 적어도 C의 상속분으로서 그 1/3인 97,407,333원¹⁾의 범위 내에서 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2019. 11. 11.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109,906,924원보다 작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7,407,333원의 범위 내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 G의 생활비 등을 전부 부담하고 건강을 챙기는 등 자식의 도리를 다 하였고, C이 2002년경 혼인 당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70,000,000원을 증여받고, H도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12,587,000원, 2006년 혼인 당시 40,000,000원 등 합계 52,587,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292,225,000원에서 피고의 기여분 99,704,430원(= 생활비 60,000,000원 + 의료비 및 간병 39,704,430원)을 공제한 후 특별수익 122,587,000원(= C 70,000,000원 + H 52,587,000원)을 합한 315,107,570원(= 292,225,000원 - 99,704,430원 + 122,587,000원) 중 C의 법정상속분은 1/3인 105,035,856원(= 315,107,570원 × 1/3, 원 미만 버림)이고 여기서 특별수익 70,000,000원을 공제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은 35,035,856원(= 105,035,856원 - 70,000,000원)이므로 가액배상의 범위가 35,035,856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C, H의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97,407,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97,407,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성진

판사조우연

판사이준철

별지

1) $292,225,000\text{원} \times 1/3 = 97,408,333\text{원}$ (원 미만 버림)이나, 이보다 작은 금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